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 년 03 월 19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(주)킹슬리자산운용
(영문명) Kingsley Asset Management Co., Ltd
(홈페이지) <http://kingsleykorea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TWO IFC 10층
(전 화) 02-6012-2100

대 표 이 사 : 최 은 영

담 당 임 원 : (직 책)대표이사
(성 명)최 은 영 (전 화)02-6012-2100

작 성 자 : (직 책)준법감시인
(성 명)김 설 (전 화)02-6012-210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 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10-1호)

최대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변경전	최대주주명	이준엽, 박종인외2명, 노기철외1명
		소유주식수(주)	130,000, 130,000, 130,000
		소유비율(%)	25%, 25%, 25%
	변경후	최대주주명	이준엽, 박종인외2명, 노기철외1명
		소유주식수(주)	260,000, 130,000, 130,000
		소유비율(%)	50%, 25%, 25%
2. 변경사유			기타주주의 주식양수
3. 지분인수목적			지분투자
- 인수자금 조달방법			자기자금
-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			없음
4. 변경일자			2021년 03월 18일
5. 변경확인일자			2021년 03월 19일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

【세부변경내역】

성명(법인)명	관계	변경 전		변경 후		비고
		주식수(주)	지분율(%)	주식수(주)	지분율(%)	
이준엽	변경 전 후 최대주주	130,000	25	260,000	50	
박종인	변경 전 후 최대주주	50,000	9.62	50,000	9.62	박진형, 박기형의 부
박진형	변경 전 후 최대주주	40,000	7.69	40,000	7.69	박종인의 자
박기형	변경 전 후 최대주주	40,000	7.69	40,000	7.69	박종인의 자
노기철	변경 후 최대주주	50,000	9.62	80,000	15.38	김영경의 자
김영경	변경 후 최대주주	50,000	9.62	50,000	9.62	노기철의 모

<기재상의 주의>

주1) 최대주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.

주2) “최대주주명”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.

주3) “소유주식수”는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를 각각

기재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(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)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- 주4) “소유비율”은 변경전·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(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 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“3. 인수목적(인수자금 조달방법, 인수후 임원 선·해임 계획 포함)”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6) 【세부변경내역】은 변경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 및 변경후 최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주7) “관계”는 변경전 최대주주,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, 변경전·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“비고”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.

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

- 주8)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(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자본총액 등)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.
- 주9)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0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